

코웨이 주식회사

ESG 위원회 규정

- 제정 2021. 08. 05

coway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코웨이 주식회사("회사")의 정관 제42조 제1항 제4호,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ESG 위원회("위원회")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와 관련 전략, 정책과 주요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ESG 경영의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 주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ESG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관계 법령 검토 및 ESG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및 선임)

- ① 위원회 위원("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ESG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 (회의의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 시 그 소집 일자를 결정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위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직무 대행자를 의미하며, 본항에서 같음)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개최 시기 및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위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회사의 ESG 경영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ESG 경영 관련 정책 수립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주요 ESG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
 - ESG 관련 KPI 설정
 - 2. ESG 경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고사항)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부의사항 외에 사항에 대해 위원 및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결의사항의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 (규정의 개정 등)

- ①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